

증권



생산물배상책임보험

원본

■ 기본사항

계약번호	F-2024-0142920	계약일자	2024.03.12	전계약번호	F-2023-0278520
보험기간	2024.03.15 24:00 부터 2025.03.15 24:00 까지				
계약자	계약자	코스모프 (417-05-35847)			
	주소	(230-46)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			
	연락처	032-937-6917	E-mail		
피보험자	코스모프 (417-05-35847)				
총보험료	94,200원	납입방법	일시납	납입보험료	94,200원

■ 배상보장사항

◆ 보험가입대상 및 보상한도액

순번	목적물명	목적물구분	산출기초단위	산출기초수	가입유형
1	코스모프1	음식물(횃집제외/매출액 500억원 이하)	연간매출액	370,000,000	제조업자
2	코스모프2	음식물(횃집제외/매출액 500억원 이하)	연간매출액	370,000,000	제조업자

목적물NO	보장		화폐	1인당	1사고당	총보상한도액	자기부담금
1/2	생산물-배상청구	대인배상	WON	100,000,000	100,000,000	100,000,000	300,000

목적물NO	소재지
1	(230-46)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, 코스모프
2	(230-46)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, 코스모프2

○ 소급적용일 (배상청구증권기준)

소급적용일	2022.03.15	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	60일
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

■ 가입약관

1.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(II)-배상청구기준	2.날짜인식유류 보장제외 특별약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■ 보험가입 유의사항 (공통)

- 이 상품에 대한 최저보험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증권당 70,000원 으로 합니다.

■ 예금자 보호안내
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-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기타

-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고센터안내 :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: 1332 인터넷 : www.fss.or.kr
- 휴면보험금 안내 : 손해보험협회(www.knia.or.kr) 현대해상(www.hi.co.kr)



왕십리지점 보험모집자명 : 엠투에셋(970099)
 ☎ 02 - 433 - 6301 FAX 0507 - 771 - 3352
 H.P 010 - 5282 - 9209
 콜센터 1588-5656
 www.hicar.co.kr



다음 Page에 계속

H 현대해상화재보험

대표이사 조용일 · 이성재



자필서명

발행일 : 2024. 04. 29 / 발행자 : 조은진(310052)
문서번호 : GI-09-239